# 쉐다곤 국제결혼 특약서

## 제1조 (특약의 목적)

갑은 국제결혼 추진에 최선을 다하며, 을은 정해진 비용을 납부하고 갑에게 국제결혼 절차를 위임한다.

## 제2조 (용어 정의)

1. 갑: 쉐다곤 국제결혼 정보
2. 을: 계약에 따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신랑

## 제3조 (갑의 책임 및 업무)

1. 갑은 미얀마 현지에서의 맞선, 결혼식, 서류처리, 변호사·공증·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한다.
2. 갑은 신부가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책임을 진다.
3. 프리미엄 계약 체결 시, 인사비, 가족식대 신랑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제4조 (을의 의무)

1. 을은 갑이 요청한 모든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고, 거짓 없이 작성한다.
2. 을은 계약금 및 잔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한다.
3. 을은 혼인신고 및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 제5조 (비용 및 납부 일정)

1. 영상맞선 가입금: 계약 시 즉시 납부 (환불 불가)
2. 계약금: 출국 20일 전 납부
3. 잔금: 출국 7일 전 납부

## 제6조 (신랑 부담 경비)

신부 여권 및 항공권, 예물, 용돈,인사비,대사관접수비용, 가족식대,[학원비, 기숙사비, 식대3개월 선납) 등은 을이 부담한다.

프리미엄 계약 시, 인사비, 가족식대 비용은 을이 부담하되, 나머지 비용은 등은 제외한다. 신랑 부담 경비지원,

## 제7조 (환불 및 해지 규정)

해지 시점 및 환불 기준:
① 행사일정 확정 전: 총비용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
② 행사일정 확정 후 출국 전: 총비용의 20% 공제
③ 출국 후 맞선 전: 총비용의 40% 공제
④ 맞선 후: 총비용의 50% 공제
⑤ 결혼 성사 후: 총비용의 90% 공제
⑥ 신부 입국 후: 환급 없음
⑦ 영상통화 후 해지: 환급 없음

\* 영상맞선 가입금은 환불되지 않음

## 제8조 (손해배상 및 재주선)

1. 을이 신부와의 약속 후 일방적으로 파혼하거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힐 경우 $15,000(USD)를 배상해야 한다.
2. 신부 입국 후 신부의 귀책사유(고의적 가출, 위장결혼 등)로 이혼 시,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700만원 납부 후[티켓,호텔비, 신랑부담] 1회 재주선하며, 원치 않을 경우 항공·숙식비,그밖의 경비를 제외한 30% 환불한다.
3. 단,가족의 언어폭력, 신랑의 폭력, 언어폭력, 외도, 음주, 강간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재주선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신랑, 신부가 자발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본인들의 선택사항 이므로 잘못 되었을 경우, 업체에 책임전가 할수 없다.

제9조 (기타)

1. 신부 입국까지 약 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미얀마 현지 사정, 한국어능력시험(토픽), 서류 처리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여행자보험은 을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으로 인한 사고는 갑의 책임이 아니다.
3. 신부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가족 진술을 기반으로 하며, 비문서적 사항에 대해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 제10조 (계약서 보관 및 효력)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서명 날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금 납부 내역]

* **영상맞선 가입금:**
* 금액: \_\_\_\_\_\_\_\_\_\_원 / 납부일: \_\_\_\_\_\_\_년 \_\_\_월 \_\_\_일
* **계약금:**
* 금액: \_\_\_\_\_\_\_\_\_\_원 / 납부일: \_\_\_\_\_\_\_년 \_\_\_월 \_\_\_일
* **잔금:**
* 금액: \_\_\_\_\_\_\_\_\_\_원 / 납부일: \_\_\_\_\_\_\_년 \_\_\_월 \_\_\_일

본인은 본 국제결혼 특약의 모든 조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 바 서명합니다.

**[신랑 기본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갑 정보]**

* 회사명: 쉐다곤 국제결혼 정보
* 대표자: 한 웅 남
* 사업자등록번호: 전남-장흥-국제-24-0001호
* 주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39
* 전화: 061-863-9982 / 010-9518-4507

**서명 및 날인**

|  **구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갑 | 쉐다곤 국제결혼 정보 대표 | (인) |
|  |  |  |
|  |  |  |
| 을 |   | (인) |
|  |  |  |

작성일자: \_\_\_\_\_\_ \_년 \_\_ \_월 \_\_ \_일

**✅ 쉐다곤 국제결혼 특약 요약본**

**📌 계약 당사자**

* **갑:** 쉐다곤 국제결혼 정보
* **을:** 국제결혼을 원하는 신랑(계약자)

**📝 주요 계약 내용**

1. **계약 목적**
	* 국제결혼 추진을 위한 업무 위임 및 서비스 이용 계약
	* 갑은 최선을 다해 국제결혼을 진행하고, 을은 비용을 지불하고 협조함
2. **비용 및 납부 일정**
	* **영상맞선 가입금:** 가입 시 납부 (환불 불가)
	* **계약금:** 출국 20일 전까지 납부
	* **잔금:** 출국 7일 전까지 납부
3. **갑의 책임 범위**
	* 영상매칭, 미얀마 현지 맞선, 예식, 서류처리, 변호사 및 공증 비용 일체 포함
	* 혼인신고 관련 서류 제공
	* **책임 종료 시점:** 신부가 인천공항 도착 시점까지
	* **프리미엄 계약 시:** 프리미엄 계약 체결 시, 일부 신랑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갑이 부담.
4. **을의 의무**
	* 갑이 요구한 서류 성실 제출
	* 한국 혼인신고 및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허위 기재 금지
	*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발생
5. **기숙사 생활 관련책임 면제 조항**

 신랑, 신부가 자발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본인들의 선택사항 이므로 잘못 되었을 경우, 업체에 책임전가 할수 없다.

**🚫 환불 및 위약금 규정**

| **해지 시점** | **위약금** |
| --- | --- |
| 행사일정 확정 전 | 총비용의 10% |
| 행사일정 확정 후 출국 전 | 총비용의 20% |
| 출국 후 맞선 전 | 총비용의 40% |
| 맞선 후 해지 | 총비용의 50% |
| 결혼 성사 후 해지 | 총비용의 90% |
| 국내 입국 후 해지 | 환급 없음 |
| 영상통화 후 해지 | 환급 없음 |

※ 영상맞선 가입금은 무조건 환불 불가

**💥 책임 및 배상**

* 을의 일방적 파혼 시: **미화 15,000달러 배상**
* 신부 입국 후 거짓결혼·고의 가출 등 발생 시: 갑은 1회 재주선 또는 일부 환불(30%)
* 신랑 귀책사유(폭력, 외도, 음주 등) 시 재주선 불가

계약자 (을): \_\_\_\_\_\_\_\_\_\_\_\_\_\_\_\_\_\_\_\_ 서명일: \_\_\_\_\_ \_\_\_년 \_ \_\_월 \_\_\_ 일 서명

국제결혼 행사 일정 가격표(수수료) **서비스 세부 구성**

체재일정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맞선 상대방

□ 인원 : 총 명 맞선예정 (최소 명 이상)

□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 별지로 첨부 가능

건강검진 항목 : 국제결혼관련 검진 성병 에이즈검사 +정신질환

항공편 : 항공

숙식 : 호텔(한국인운영호텔) 식사(호텔또는 현지식)

여행자보험 : 여행자보험 가입여부.이용자 직접 가입

결혼식 및 신혼여행 : 전통혼례, 쉐다곤파고다 외 양곤투어

총비용 세부내역: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일반계약시)

| **항목**  | **금액(원)** |
| --- | --- |
| 신랑/직원항공료/비자  | 2,000,000 |
| 숙박/숙식비 | 1,500,000 |
| 맞선비용 | 800,000 |
| 통역/가이드 | 1,000,000 |
| 차량렌트  | 1,000,000 |
| 사진/보조 | 300,000 |
| 서류 번역/공증 | 800,000 |
| 변호사 비용 | 1,800,000 |
| 판사/사무관비용 | 2,500,000 |
| 전통혼례/하객식대  | 5,700,000 |
| 스님인사비  | 600,000 |
| 마담비용  | 1,500,000 |
| 진행요원 | 200,000 |
| 중개수수료 | 2,000,000 |
| 기타경비  | 300,000 |
| **총합** | **22,000,000** |

### ✅ 변동 가능성 관련

**상기 명시된 비용 및 일정은 현지의 국가 정세, 물가,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신랑 부담 항목:** 항공권,50 여권,200 예물,100 용돈,월25 가족식대,[어학당·기숙사비, 신부식대3개월 선납]250$ \*3개월선납 **\*\*신랑 부담 항목, 물가,환율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프리미엄 계약 시:** 용돈·예물 포함, 일부 비용 갑 부담 (단,인사비·가족식사제외)
* **신부 입국까지 약 8개월이상 소요**
(토픽시험 일정, 현지 법령 등 따라 변동 가능)
* **여행자보험은 신랑이 직접 가입 필수. 신랑 부담 항목 일부 변동가능성 있음**

본인은 쉐다곤 국제결혼 정보의 계약 특약 요약본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계약자 (을): \_\_\_\_\_\_\_\_\_\_\_\_\_\_\_\_\_\_\_\_ 서명일: \_\_\_\_\_ \_\_\_년 \_ \_\_월 \_\_\_ 일 서명

회원가입계약서

**갑(국제결혼중개업자)**

사업자명: 쉐다곤 국제결혼 정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전남-장흥-국제-24-0001호

주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39

대표자 : 한 웅 남 (인 또는 서명)

**을(국제결혼중개 의뢰인)**

회원성명: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갑과 을 간의 회원가입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계약일 : 년 월 일

1. 국제결혼 상대 국가는 미얀마 이다.

2. 갑은 을의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이행하고, 을은 국제결혼 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이하 “총비용”)를 갑에게 지급한다. (별도의 성혼사례비 없음)

3.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구 분 | 영상가입금 | 중도금 | 잔 금 |
| 지급일 |  |  |  |
| 금 액 | 원 | 원 | 원 |
| 회사의 직인이 없는 지급액은 지급되는 않는 것으로 간주될수 있다. 총 원  |

**쉐다곤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  |
| --- |
|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국제결혼중개 의뢰인(이하 “회원”이라 한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구성)**

① 국제결혼중개 계약은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국제결혼 행사일정표(붙임2),국제결혼중개 특약계약서 등 4종으로 구성**된다.

② 회원가입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국제결혼 상대국가

2.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및 납입시기**

3. 회원이 요구하는 맞선 상대방의 조건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맞선 상대방 인원수 및 이들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2. 맞선 상대방이 받게 될 건강검진 항목

3.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사항

4. 체재일정, 항공일정, 현지 숙식관련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5.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내역

6. 기타 회원과 사업자간의 특약사항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결혼 당사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이라 함은 회원이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의 출국부터 다시 국내로 귀국하기까지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제5조 제1항의 내용) 일정을 말한다.

④ “맞선”이라 함은 회원이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에서 사업자가 중개하는 외국 국적의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⑤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⑥ “제휴업체”라 함은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일체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제4조 (회원가입)**

①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한 후 사업자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회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있는지 여부

2.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여부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자가 국제결혼중개를 추진해도 되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여권, 혼인신고 등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결혼 및 입국관련 서류수속 안내 및 대행

2.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3. 회원의 항공권 및 현지 숙식제공, 통역서비스, 현지가이드

4.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및 건강 검진

5. 회원과 맞선 상대방과의 결혼식․피로연 등 결혼관련 행사 및 신혼여행

6. 기타 회원의 국제결혼을 위해 사업자와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선택한 제휴업체가 상기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결혼행사일정표(붙임2)는 **행사일정 확정 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회원과 협의하여 국제결혼 행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출국 후 회원의 요청 또는 회원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맞선 상대방의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자는 추가된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회원과 맞선 보게 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휴업체를 통해 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업자는 제휴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처리할 업무의 내용 등을 **계약 전에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맞선 상대방에게회원이 제출한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⑨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사업자는 **출국 전에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결혼관련 법령 및 수속절차 등을 미리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사업자에게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원은 국제결혼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회원은 국제결혼 상대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 안내 직원의 안내 사항을 따라야 하며 또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계약서(붙임1)에 적시된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중개비의 정산)**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제외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후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정해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회원의 요청 또는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회원과 사업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회원이 비용증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요금의 변경)**

① 국제결혼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운송, 숙박시설 등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출국 전에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시작된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회원이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국제결혼의 성사 후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국제결혼의 재주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회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1.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4.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6.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환급금 없음**

**제13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원의 각종 서류제출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3. 회원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5. 회원이 제7조 제3항에 의한 안내직원의 안내사항을 무시하거나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제14조 (인터넷서비스 이용관련)**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고의로 알려주어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이 도용됐거나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자가 촬영하고 소유한 회원의 국제결혼 사진 등을 회원의 동의를 받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게시된 사진 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사업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회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국제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가 없이는 국제결혼중개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는 자와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러한 회원의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회원이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사업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의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특약)**

사업자와 회원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별도의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름을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사업자와 회원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만일 자율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소비자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③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인은 본 국제결혼 표준 약관의 모든 조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 바 서명합니다.

**갑(국제결혼중개업자)**

사업자명: 쉐다곤 국제결혼 정보

계약자 (을): \_\_\_\_\_\_\_\_\_\_\_\_\_\_\_\_\_\_\_\_ 서명일: \_\_\_\_\_ \_\_\_년 \_ \_\_월 \_\_\_ 일 서명

|  |
| ---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0.11.17> |
|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
|  |
| 등록번호 :  | 제 전남-장흥- | 국제-24- | 0001호 | 발급일자 |  |  |  |  |
|  |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e-mail |
| 휴대전화 |
|  |
| 신상정보 | 혼인경력 및 자녀유무 | [ ]초혼 재혼([ ]이혼, [ ]사별) 재재혼([ ]이혼, [ ]사별) 자녀([ ]유, [ ]무) |
| 건강상태  |  |
| 직업(직종) |  | 직장명 |
| 범죄경력 |  |
| 기타정보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상기인의 신상정보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  |
|  확인자(업체명, 대표자명) 쉐다곤국제결혼정보 |  (서명 또는 인) |
| 쉐다곤국제결혼정보 귀하 |
|  |
| 동의서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의 신상정보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인적사항 및 신상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

**국제결혼 손해배상 청구절차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

쉐다곤국제결혼은서울보증기금에50,000,000원이가입되어있어,결혼중개와관련하여손해를입었을경우보증보험금을SGI서울보증에청구할수있습니다.(법시행령 제7조 1항)

 보증보험 가입금액 ₩50,000,000

**신고등록관청(당해결혼중개업체소재지관할)신고후**


.보증보험금(예치금)의 청구 이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혼중개업법 제25조 1항에 의거>

2. 보증보험금(예치금)의 지급 청구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 할 경우에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

이용자는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 배상 합의서 (공정증서 이어야 함)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시행령 제7조 2항에 의거>

3. 화해, 조정과 재판의 경우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 합의서(공정증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비.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4.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준비.

**✅ 국제결혼 출국 전 준비서류**

**1. 🏥 건강진단서 (국제결혼용)**

* **발급처**: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
* **포함 항목**:
	+ HIV/AIDS
	+ 성병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
	+ B형/C형 간염
	+ 정신질환 여부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2. 🧾 범죄기록사실확인서 (범죄경력회보서)**

* **발급처**: 경찰서 (지문 채취 필요), 또는 민원24/정부24
* **주의**: “본인 확인용”이 아닌 “외국 비자용” 또는 “제출용”으로 요청
* **포함 내용**: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등 여부

**3. 💍 혼인관계증명서(영문이가능한경우 영문)**

* **발급처**: 동사무소, 정부24
* **용도**: 초혼/재혼 여부 확인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4. 👪 가족관계증명서****(영문이가능한경우 영문)**

* **발급처**: 동사무소, 정부24
* **용도**: 가족관계 확인

**5. 💼 직업 증명 서류 (택 1) (영문이가능한경우 영문)**

**① 자영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사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or 세무서에서 발급)

**② 회사원일 경우**

* 재직증명서
* (필요시) 소득증명원

**③ 농업 종사자일 경우**

* 영농사실확인서 (읍면동사무소)

**6. 📷 여권 & 증명사진**

* 여권 원본 및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4~6장
* 신분증원본 및 사본
* 아버지 성함과 어머니 성함은 출국 전 꼭 회사에 제출(영문으로)

**개인정보 및 사진/영상 수집·이용·제공·활용동의서**

**초상권 및 영상 배포 판권 소유에 대한 동의**

1) 쉐다곤국제결혼정보를 통해 촬영, 제작, 수령한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할

권리 일체는 쉐다곤국제결혼정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쉐다곤국제결혼정보 사업 중 촬영, 제작, 수령한 사진 및 영상의 판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며, 모든 소유권과 저작 및 판권 등은 쉐다곤국제결혼정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쉐다곤국제결혼정보에서 촬영, 제작, 수령한 사진 및 영상을 제3자

(관계기관, 사업보고서, 후원처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름 : (인)

■

쉐다곤국제결혼정보 귀하

**통역 요청서**

쉐다곤국제결혼정보

국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역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역일시: 20\_\_\_년 \_\_\_월 \_\_\_일 ( \_\_\_ : \_\_\_ ~ \_\_\_ : \_\_\_ )

통역 내용

|  |  |  |
| --- | --- | --- |
|  | 한국인 | 외국인 |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나이 |  |  |
| 혼인여부 |  |  |
| 거주지 |  |  |
| 연락처 |  |  |
| 직업 |  |  |
| 급여/연봉 |  |  |
| 학력 |  |  |
| 신장/체중 |  |  |
| 형제관계 |  |  |
| 건강상태 |  |  |
| 범죄경력 |  |  |
| 부모 (父: 세/직업, 母: 세/직업) |  |  |

재혼인 경우

|  |  |  |  |
| --- | --- | --- | --- |
| 항목 | 한국인 | 외국인 |  |
| 이혼/사별 연도, 이혼사유, 자녀유무, 동거자녀 등 |  |  |  |

서류 번역본 수령/확인 여부

|  |  |  |  |
| --- | --- | --- | --- |
| 항목 | 한국인 | 외국인 | 비고 |
| 혼인관계증명서 |  |  |  |
| 직업관련서류 |  |  |  |
| 건강진단서 |  |  |  |
| 범죄경력증명서류 |  |  |  |

기타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이 기재한 상기 사항이 진실임을 확인하며, 상대방의 신청정보에 대해 성실히 고지받고 상대방의 신상정보 서류 번역본에 대해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외국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의거, 상기 내용을 통역하여 설명하였고 한국인, 외국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통역 및 결혼 관련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통역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업체 대표: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쉐다곤 국제결혼 정보**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12.8.2>

**서면 동의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국적의 ○○○○에 대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증명서류 및 번역본을 제공받았으며, ○○○○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기숙사 생활 관련 책임 확인 및 동의서]**

본인은 국제결혼 계약에 따라, 신부가 한국 입국 후 갑(회사)에서 제공 또는 권장하는 기숙사 생활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제1조 (기숙사 생활의 안내 및 권장)**

회사는 신부의 초기 정착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일정 기간 기숙사 생활을 권장하며, 관련 안내를 제공합니다.

**✅ 제2조 (기숙사 생활 미이행 시 책임)**

신랑의허락,또는 신부가 자발적으로 기숙사 입소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퇴소하는 경우, 해당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및 문제(예: 외부 거주로 인한 갈등, 안전 문제, 통제 어려움 등)는 **신부 본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3조 (사전 협의 및 상호 인지)**

신랑과 신부는 본 조항의 내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신부의 기숙사 생활 여부에 대해 서로 협의하였고, 해당 선택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신랑·신부 서명란**

| **항목** | **성명** | **서명** | **날짜** |
| --- | --- | --- | --- |
| 신랑 | \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 |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 신부 | \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 |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 본 동의서는 본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서와 함께 보관됩니다.